

소재·부품·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대표자	생년월일	
	회원사의 수	전화번호	
	주된 사무소의 주소		
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회원 명부 2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사업계획서 4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무구조에 관한 명세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설립신청서 신청인	➔	접 수	➔	심사 처리기관: 산업통상부	➔	결재	➔	결과 통보
--------------	---	-----	---	-------------------	---	----	---	-------